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임시허가, 규제특례로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 등〉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91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임시허가, 규제특례로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양도· 압류 금지 등	2
※ 참고자료 1	9
※ 참고자료 2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4. 28.

다. 회부연월일 : 2025. 4.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임시허가, 규제특례로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 등

가. 개정안 요지

- 임시허가, 규제특례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함(안 제39조2 신설).
- 임시허가, 규제특례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타인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안 제39조의3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9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 계좌) ① 제37조제9항(제38조의 3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현행	개정안
	를 포함한다)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37조 제10항(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현행	개정안
<u><신 설></u>	<u>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39조의3(압류 등의 금지) ① 제37조 제9항(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u> <u>②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u>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37조제9항·제10항¹⁾ 및 제38조의3제6항²⁾에 따르면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책임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는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ICT 규제샌드박스³⁾ 제도의 종류로,

- 임시허가는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법령 정비에 앞서 임시로 출시를 허가하는 것이고,

- 실증특례는 신기술·서비스를 시험 및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규모, 지역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를 말함.

- 개정안은 이와 같은 임시허가, 실증특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임시허가)

⑨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기술·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9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다.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감독)

⑥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7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3) 참고자료 1 참조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⁴⁾에 따르면 재난 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업융합 촉진법」에 규제특례 손해배상책임보험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한⁵⁾ 바 있음.

- 참고로 현재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고로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는 총 6건으로, 6건 모두

-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5.(생략)
 -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 7. 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이 제7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의 분석·평가 결과 해당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이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실증특례로 발생한 사고이며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

<책임보험금 지급 사례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업체명	과제명	사고일시	사고내용	지급금액
1	모션디바이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2019.11.15.	넘어지면서 무릎 부상	909
2			2021.4.29.	직원이 VR기기 착용 중 떨어져 부상	999
3	탐교육문화원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	2022.3.23.	이용객의 안경에 의해 눈썹 부위 부상	1,292
4	세컨신드롬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	2024.7.23.	건물 누수로 인해 고 객물품 피해 발생	53
5	안녕	이동약자 맞춤형 모빌리 티 서비스	2023.10.22.	동행 중 다리부상	4,408
6	우아한형제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2025.1.9.	자율주행로봇과 차량 접촉사고	600

주: 1. 1번 및 2번은 법령정비 완료로 종료됨(2021. 7. 17.).

2. 3번은 사고당시 실증특례였으나, 규제부처(문화체육관광부)의 법령정비 필요 판
단에 따라 현재 임시허가로 전환됨(2024.6.2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편 개정안은 법제처의 “손해배상청구권 압류 금지 규정 신설
을 위한 규제특례 관계법률 정비계획”(2025. 3.)에 따라 발의된
법안 중 하나로,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7개는 각 소관 상임위
원회에서 심사 중임(참고자료 2 참조).

- 법안의 개정 내용은 인적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
압류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
금에 대한 채권의 압류 금지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이에 동의하는 입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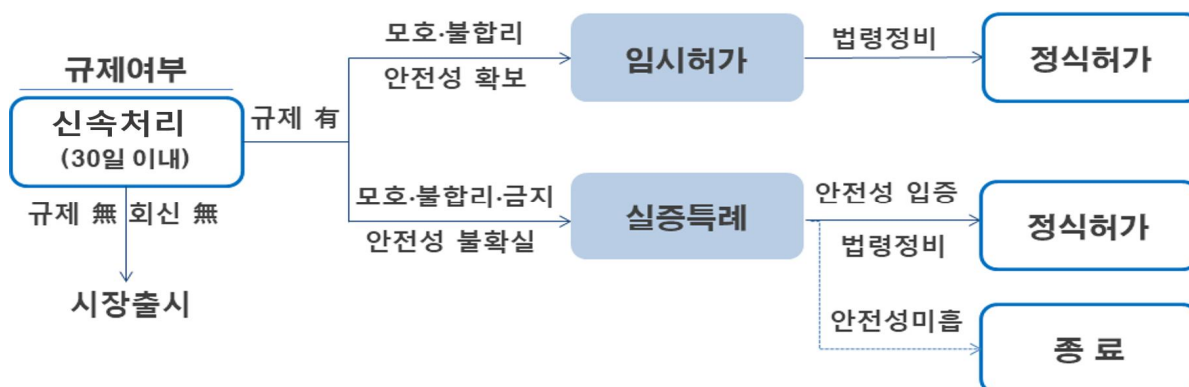
문 의 처
02)6788-5228

※ 참고자료 1: ICT 규제샌드박스⁶⁾

□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하여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하며, 그 종류에는 신속처리(확인)^①, 임시허가^②, 실증특례^③가 있음.

- ① 규제 존재 여부·내용 문의 → 30일 이내 미회신시 無규제 간주
- ② 법령 모호·불합리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출시
- ③ 법령 모호·불합리·금지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허용

< 규제샌드박스 운영절차 >



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참고자료 2: 규제샌드박스 관련 정비대상 법률 현황(7개)

연번	법률명	조문	소관위원회 심사현황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 제39조의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심사중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9조의2 제69조의3	
3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3조의3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중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의4 제53조의5	
5	「산업융합 촉진법」	제32조의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심사중
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0조의2 제140조의3	
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5조의2 제45조의3	환경노동위원회 심사중

주: 5번 법안은 인적·물적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양도·압류 금지이고, 나머지 6개의 법안은 인적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양도·압류 금지 및 손해배상금 수급전용 계좌 관리임.